

「구미 허리기업 성장레벨업 1+1 지원사업 공공위탁  
동의안」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6년 1월 5일

나. 제출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6년 1월 6일

라. 상정일자: 2026년 1월 19일

제2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경제국장 김 영 철

나. 제안이유

- 구미 허리기업 성장레벨업 1+1 지원사업은 미래 신산업 분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허리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임
-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## 다. 주요내용

1) 사무명 : 구미 허리기업 성장레벨업 1+1 지원사업

2) 추진근거 및 필요성

가) 추진근거

(1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
(2)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, 제6조

(3) 「구미시 과학기술 진흥조례」 제8조, 제9조

(3)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나) 필요성 : 기업 발굴, 선정, 사업관리, 컨설팅, 상담 등을 위해 축적된 기업지원사업의 경험과 기업·전문가 네트워크가 있고, 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에 위탁 필요

3) 위탁 사무 내용 : 구미 허리기업 성장레벨업 1+1 지원사업 업무 전반

가) 사업세부계획 수립 및 선정평가위원회 구성·평가, 허리기업 선정

나) 기업 간담회 실시, 허리기업별 전담PM 매칭, 과제 추진현황 점검

다) 사업 추진결과 검토, 지원기업 성과 모니터링 및 성과확산 지원 연계

4) 위탁시설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 등) : 해당없음

5) 위탁기간 : 2026. 2. ~ 12.

6)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: 800백만원(시비)

(단위 : 백만원)

계	인건비	간접비	사업비	비고
800	160	80	560	

7) 적정성 검토결과 : 적정 ※ 2025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심사위원회 심의(25.12.26)

8) 위탁구분 : 재계약 (수탁기관 : 구미전자정보기술원)

- 9) 부서 의견 : 기업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

## 라. 참고사항

### ○ 관계 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-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, 제6조
- 「구미시 과학기술 진흥조례」 제8조, 제9조
-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### ○ 예산조치 : 2026년도 예산편성

### ○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

: 적정(2025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)

### ○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, 감사결과

: 2025년도 성과평가 및 감사 미시행(관련 조례 2026. 1. 1. 시행)

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호 규

### ○ 본 동의안은

- 미래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관내 제조 기반 허리기업<sup>1)</sup>을 발굴·육성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---

1) 핵심 소부장 기업에 소재·부품·장비 등을 공급하는 중간단계 기업(매출액 50억~500억 규모)

○ 검토 결과,

-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다수의 기업지원사업 수행 경험과 기업 및 전문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, 본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 측면에서 타당한 기관으로 판단됨.
- 특히, 본 사업이 최대 2년간 추진되는 자율선택형 패키지 사업임을 고려할 때, 연속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의 연임 등 일관되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집행기관에서는 성과평가 및 감사를 실시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·감독 체계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